



COVID Safe 체크리스트: 푸드 코트

2020년 7월 21일부터 유효

[공공보건 최고보건자문관 \(Chief Health Officer\)](#)의 지시 하에서 [COVID Safe 체크리스트](#)에 의거하여, 이 푸드 코트 체크리스트는 쇼핑 센터 매니지먼트가 로드맵 3단계 중에 푸드 코트를 다시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을 제공합니다. 푸드 코트는 쇼핑 센터 식당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쇼핑 센터 매니지먼트가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.

안전한 영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

1. 안전한 실천방안 홍보

- 고객이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매장에 입장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안내문을 입구에 붙여둡니다.
- 직원들/임차인들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즉시 귀가하도록 합니다.
- 손님들이 모이는 구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여둡니다.
- 사회적 거리두기, 청소 및 위생 요건들과 관련하여 푸드 코트 및 다른 입주 상점들과 협력합니다.
- 보안 직원들은 가능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, 특히 바쁜 시간에 주의합니다.
- 가능한 경우에는 PA 공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코로나19 요건들을 상기시킵니다.
- 고객들이 쇼핑 센터 내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기타 홍보물을 통해 코로나19 요건들을 알립니다.

2. 사회적 거리두기

- 일인당 최소 4 제곱미터 (실내 및 야외 좌석 공간 포함).
- 테이블은 최대 6명의 손님을 위해 준비됩니다.
- 각각 다른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 간의 간격이 최소 1.5미터가 되도록 자리를 배치합니다. 테이블의 위치가 고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지 않으면, 한 테이블씩 걸러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.
-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소에는 바닥에 표시를 합니다.
- 뷔페식 셀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.
- 가능하다면 주문하는 카운터와 수령하는 카운터를 별도로 제공합니다.
- 고객들과의 응대가 많은 경우에는 카운터에 물리적 가림막을 제공합니다.



3. 손 위생

- 적어도 푸드 코트의 입구/출구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손소독제를 비치합니다. 손소독제에는 에탄올 최소 60% 혹은 아이소프로판올 최소 70%가 함유되어야 합니다.
- 직원들은 가능하면 액체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어서 위생수칙을 잘 준수합니다.

4. 빈번한 환경 청소 및 소독

- 회전율이 높은 푸드 코트 테이블, 의자, 벤치 및 트레이 등을 손님들이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씻고 소독합니다.
- 각 코스마다 수거되어 상업용 등급의 식기세척기나 유리세척기로 세척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일회용이 아닌 도자기 그릇 / 식기/ 유리잔 등의 사용이 허가됩니다. 테이크어웨이 푸드의 경우, 일회용 수저와 용기가 제공됩니다.
- 푸드 코트에 속한 매장들은 필요한 경우 일인용으로 포장된 조미료나 양념을 제공합니다. 소스 병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미료나 양념은 제거합니다.
- 일회용 메뉴판을 사용하거나, 소독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라미네이팅으로 코팅하거나, 메뉴판 보드를 벽에 게시합니다.
- EFTPOS 기기, 손잡이, 난간, 엘리베이터 버튼, 쓰레기통 및 트레이 반환 구역, 푸드 코트 주문/수령 카운터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만지는 표면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합니다.
- 화장실과 욕실의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합니다.
- 어린이 놀이 구역의 접근을 금지합니다.
- 공용 식수대나 정수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거나, 전원을 끄고 이용을 금지합니다.
-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은 적절한 PPE (개인보호장비)를 갖추고, 청소 도구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합니다.

5. 검토 및 모니터링

- 업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건 당국이 제공한 최신 지침과 권고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.
- 이 체크리스트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다른 COVID Safe Industry 계획의 일부입니다.
- COVID Safe 사업장이라는 증거로서 서명된 체크리스트를 잘 보이는 곳에 공개합니다.
- 다음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와 자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-www.covid19.qld.gov.au 및 www.worksafe.qld.gov.au
- 일반적인 직장 관련 불만이 있는 피고용인은 1300 362 128번으로 WHS Queensland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직장보건안전 (WHS) 의무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사업주들은 1300 005 018번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조합이나 산업 협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체가 이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있는지 우려가 되는 소비자들은 134 COVID (13 42 68)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.

Unite against COVID-19



Work Health & Safety Act 2011
(직장보건안전법)이 규정한 바에 따라
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사람(들)의
성명:

서명 & 날짜: